

95.5.28

“부부관계不實” 이혼사유된다

부부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성관계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李太云부장판사)는 27일 부부관계의 불만을 이유로 A씨(34)가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이혼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금 3천1백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란 상대방의 부부관계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며 『B씨가 평소 A씨의 부부관계 불만을 대화 등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소시켜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방의 J대를 졸업한 A씨와 서울의 S대 출신인 B씨가 결혼한 것은 지난 88년11월. A씨와 B씨는 그러나

결혼하자마자 불화를 빚기 시작했다.

같은 생활에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가정법원 30代부인 청구소송 인정 남편 영업사원부인과 「잠자리」싸고 갈등

시대·친정가세 代理戰으로... 7년만에 파경

대기업 영업부 사원인 B씨는 거의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퇴근, 그대로 꿈아떨어져

다른 부부들은 1주일에 3, 4회씩 부부관계를 갖고 있으나 자신들은 1주일에 1회정도로

B씨는 성관계를 가질때마다 달력에 표시까지 해가며 자신의 노력을 입증하려 했지만 거의

머리는 A씨에게 『서방 잡아먹을』이라며 극언을 서슴지 않았고 친정부모족에서도 파경을

한 A씨는 B씨의 면전에서 노골적으로 이를 비꼬았고 심지어 아침식사를 차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불만을 나타냈다.

A씨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그와중에 아들(4)과 딸(3)이 생겼지만 부부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그러던중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시어

화는 급기야 집안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고 B씨 또한 맞소송으로 대응, 결혼생활 7년만에 양측의 부부관계는 끝이 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부사이에 중요한 것은 성관계의 횟수가 아니라 부부사이의 조화』라며 『부부관계에서 야기된 불화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까지 알려 문제를 확대시킨 것은 부부 모두의 잘못』이라고 밝혔다.